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258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이드

담당변호사 최웅구, 백이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동주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성호

2.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4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50,000,000원 및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14.부터, 금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20.부터, 금 15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28.부터, 금 5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1. 3.부터 2024. 5. 31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, 피고 주식회사 C과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,000,000원 및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14.부터, 금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20.부터, 금 15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28.부터, 금 5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1. 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함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피고 B은 원고에게 2021. 11. 초순경 피고 주식회사 C 소유의 임야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자금 조달 문제가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응낙한 후,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‘피고 C’이라고 한다)의 은행계좌로 2021. 12. 14. 금 2,000만 원, 2021. 12. 20. 금 1,000만 원, 2021. 12. 28. 금 1,500만 원, 2022. 1. 3. 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2,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 취지 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가.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2021. 11. 초순경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금 5,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, 원고가 2021. 12. 13.부터 2022. 1. 3. 네 차례에 걸쳐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 은행계좌에 합계 5,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, 2, 3, 갑 제8호증,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5,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

- 1) 원고가 파주시 D 사업지로 두고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상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- 2) 상법 제47조에 의하면, 상인이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고(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), 상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,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- 3)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5,000만 원에 대하여 그 각 대여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. 5. 31.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,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(선택적 청구)

가.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

원고가 2021. 12. 13.부터 2022. 1. 3. 네 차례에 걸쳐 피고 C 계좌로 송금한 5,000만 원이 피고 C이 법률상 권원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. 오히려 앞서 본 제2항의 판단과 을가 제1, 3, 4,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모자라자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서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,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후 2021. 12. 13.부터 2022. 1. 3. 원고가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계좌로 5,000만 원을 송금하고, 이로써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5,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

청구는 이유 없다.

나.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

원고가 2021. 12. 13.부터 2022. 1. 3. 네 차례에 걸쳐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 은행계좌에 합계 5,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 5,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한다.

판사 박근정